

## 교직원복지규정

제정 : 2011.07.01

개정 : 2014.07.01

개정 : 2017.05.01

개정 : 2020.03.01

개정 : 2021.12.01

개정 : 2022.05.01

개정 : 2022.12.01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교직원의 후생복지제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다양한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고, 이를 통해 구성원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대학교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이다.

제2조(정의) 이 규정에서 “복지”라 함은 구성원이 대학교에 소속감과 자부심을 느끼고, 맡은 업무에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정신적, 환경적, 재정적 지원을 하는 과정을 의미한다. <개정 2021. 12. 01.>

제3조(적용대상) ① 이 규정은 본 대학교의 구성원 중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로 한다.  
<개정 2021. 12. 01.>

1. 전임교원
2. 연구년, 교환교수 등으로 인해 해외에 파견 중인 전임교원
3. 직원
4. 조교

② 일부 사항에 대해서는 비전임교원(겸임교원, 강사 등)을 포함한다.  
<개정 2021. 12. 01.>

제4조(복지위원회 구성) ① 교직원의 후생복지와 관련한 제반사항을 협의하고 심의·결정하기 위하여 복지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고 한다)를 둔다.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 <개정 2021. 12. 01.>

② 위원장은 사무처장이 되며, 위원은 총장이 위촉한다.  
<개정 2014. 07. 01., 2020. 03. 01.>

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. <개정 2017. 05. 01.>

④ 본 위원회의 업무는 사무처에서 주관하며,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.

<개정 2014. 07. 01., 2020. 03. 01.>

제5조(복지위원회 기능) ① 위원회는 교직원의 후생복지와 관련한 제반사항을 협의하고 심의·결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는다. <개정 2021. 12. 01.>

1. 후생복지의 운영에 관한 주요시책 및 운영방법 결정
2. 후생복지의 설치와 폐지에 관한 심의
3. 교직원 복지 규정의 개정사항 심의
4.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

②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,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. 가부동수의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. <개정 2021. 12. 01.>

제6조(후생복지의 범위) 이 규정에서 적용되는 후생복지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<개정 2021. 12. 01.>

1. 의료혜택 - 건강검진제도, 의료비할인제도, 체육시설 이용 및 할인 등
2. 교육혜택 - 교육비 지원, 어학지원비, 평생교육제도 등
3. 여가 및 문화지원 - 휴양시설사용, 교직원 동아리지원, 교통시설지원, 문화활동지원 등
4. 교내시설이용 - 차량, 교내 부대시설, 기숙사 이용 시 할인 등

제7조(후생복지의 시행 및 이용) ① 제6조에서 적용되는 후생복지의 시행 및 이용은 [별표 1]에 의한다.

② 제1항의 시행 및 이용에 관한 사항 중 예산이 수반되는 복지는 당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한다. <개정 2021. 12. 01.>

제8조(시행세칙)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복지는 복지위원회가 결의하고 총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7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2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1] <개정 2022. 05. 01., 2022. 12. 01.>

### 후생복지의 운영

구분	프로그램	내용	대상	시행내용
의료 혜택	1) 건강검진제도	교직원들의 건강검진을 시행	제3조①항 1,3	별도의 시행계획 마련 중
	2) 의료비할인제도	지역사회 또는 종합병원 급의 의료기관 이용 시의 할인 혜택	제3조①항 1,2,3	세명대학교 부속 한방병원 교직원 할인
	3) 체육시설 이용 및 할인제도	교내 또는 지역사회의 체육 시설(ex: 골프장, 수영장 등) 이용 시 할인 혜택	제3조①항 1,2,3	사전 허가된 경우 세명대학교 체육시설 무료이용
교육 혜택	1) 교육비지원	대상: 자녀 및 배우자 중·고등학교 교육비 지원 본교 및 세명대학교 입학 시 학비 지원 (매학기)	제3조①항 1,3	중·고등학교 자녀교육비 지원 대원대학교, 세명대학교 근속년수에 따른 학비감면 5년이상 - 수업료 50% , 7년이상 - 수업료 전액
	2) 어학지원비	대상: 본인 학원비 지원 어학연수 시 일부 지원	제3조①항 1,3	교직원 어학능력개발비 년 240만원/ 6회
	3) 평생교육제도	자기 계발을 위한 지원 평생교육원 할인	제3조①항 1,2,3,4	평생교육원(대원대학교, 세명대학교) 일부할인
여가 및 문화 지원	1) 휴양시설사용권	소노호텔앤리조트, 리솜리조트	제3조①항 1,2,3,4	본인 희망일 사용
	2) 교직원 동아리 지원	교직원 동아리에 소요되는 경비 일부 지원	제3조①항 1,2,3,4	
교내 시설 이용	1) 차량	학교 차량 이용 단, 개인용도 사용은 불허	제3조①항 1,3	학교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학교차량 이용
	2) 부대시설	교내 시설(체육관사용 등)	제3조①항 1,2,3,4,②항	교내시설 (수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)
	3) 숙박시설	생활관 이용	제3조①항 1,2,3,4,②항	본인 희망시 사전허가득 후 사용가능